

문서번호 : 하나편드펀드회계 1팀-2018-101

2018년 9월 28일

수신 : 하나 UBS 자산운용(주)

참조 : 오퍼레이션팀장

제목 : 기준가격 오류 사실의 보고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가 사무관리하고 있는 하나 UBS 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] ClassA와 ClassA-E의 보수율(판매보수) 입력 오류로 인해 해당 펀드 기준가격이 아래와 같이 과소평가되었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오류발생 경위

- 해당 펀드는 2018년 1월 15일 신규설정 되었으며, 집합투자계약은 2017년 12월 15일 당사 운용지시 메일을 통해 최초 수령하였습니다.
- 2017년 12월 28일 보수율 등이 변경된 규약을 재수령하였으나, 담당자 착오로 변경된 규약을 '규약 보관 폴더'에 저장하지 않았습니다.
- 신규설정 당일(2018년 1월 15일) 펀드정보 등록 시, 최초 수령한 변경 전 규약의 보수율을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, 확인자 또한 변경 전 규약으로 Cross-check 하면서 입력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.

나. 오류 영향

- 변경 전/후 보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펀드명	변경 전 판매보수율	변경 후 판매보수율
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 ClassA (40281)	연 0.70%	연 0.40%
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 ClassA-E (40282)	연 0.35%	연 0.20%

(펀드 판매회사 : KCB 하나은행, 하나금융투자)

- 보수율 차이로 인한 기준가격 영향은 별첨과 같습니다.

다. 오류발생 이후 조치사항

- 2018년 9월 19일, 정상(변경 후) 보수율을 반영하여 설정일 이후 기준가격을 재산출하였습니다.
- 과대계상된 판매보수금액을 일단 펀드의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, 추후 과다지급된 판매보수가 환입되면 미수금에서 정산될 예정입니다.



라. 투자자 보호조치

- 오류발생 기간 중 추가설정은 없었으나 일부해지가 있었습니다.
- 기준가격을 재공시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재공시 기준가격으로 해지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소지급된 차액을 해지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마. 재발 방지 대책

- '규약 변경 관련 운용지시'와 '규약 보관 폴더'를 대사하는 전담인력과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최종 규약이 정확히 Update 되도록 하겠습니다.
-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된 규약만을 당사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운용회사 규약담당 부서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.

금번 오류로 인해 해당 펀드의 판매기관 및 운용기관의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. 본건과 관련된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절감하며, 관련된 후속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
별 첨 : 1. 변경전후 기준가격. 끝

하나펀드서비스(주)  
대표이사 오상영

